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**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**

**2. 제출 및 회부일자**

-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6일
-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**3. 제안이유**

-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·시행(2008. 4. 7)됨에 따라 현행 하천법령에 맞도록 조례전부개정 하고자 함

**4. 주요골자**

-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변상금을 정함(제2조)
-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%이상 증가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·조정토록 함(제3조)
- 재해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정함(제4조)
-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 및 방법을 정함(제5조)
- 점용료 등의 반환금 계산 방법을 정함(제6조)
- 점용료 징수행위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 및 교부율 정함(제7조)
- 징수금 교부시기를 정함(제8조)
-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세조례를 준용하도록 함(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
- 종전의 조례로 정하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 주요사항을 하천법시행령에 정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 
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.